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급경비 반납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 위탁교육 운영상황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결과보고 제출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11조의2 제1항)

- 1) 제13조의 야간취학 등의 실제 절차에 맞도록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경비의 반납조치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항)

- 1) 현행 규정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경비에 대한 반납조치만 명시하고 있어 제13조에 따라 지급된 경비가 반납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 2) 이에 동규정 제13조에 따라 지급된 경비의 반납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8호의 반납사유와 별표의 반납액 산정 기준 신설

다. 경비지급 대상 명확화(안 제13조)

- 1) 제13조에 따라 경비를 지급하는 대상을 “군위탁생”으로 명확하게 규정

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신설)

1)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야간취학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군위탁생 선발·추천·경비지급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주간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군위탁생은 교육결과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를 “제6조 또는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우”를 “경우 과정을 수료했으나 국방부 장관
이 정하는 기간 내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조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제13조제2항 중 “의하여 취학하는 자”를 “따라 취학하는 군위탁생”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특칙) 방위사업청에 근무
하는 군인 중 「군인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의 “획득전문직
위”에 보직하는 장교가 제13조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 “육군, 해군 및 공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으로, 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의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군 참모총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제13조의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 구분란 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2조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구분란 제3호 중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12조제1항제3호에”로 하며, 같은 표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 100분의 50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8호의 신설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교육기관에 입학한 군 위탁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교육결과 보고) ① 군 위탁생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군으로 복귀해야 하며, 복귀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보고하는 서류(이하 “교육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의2(교육결과 보고) ① -- ----- ----- ----- ----- ----- ----- ----- ----. <u>다만 제13조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군위탁생은 교육결과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u>제6조</u> 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 ----- ----- ----- <u>제6조 또는 제13조</u> ----- ----- ----- ----- -----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교육 과정이 학위 과정인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신설>

② ~ ④ (생략)

제13조(야간취학 등) ① (생략)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

-----.

1. ~ 6. (현행과 같음)

7. ----- 경우 과정을 수료했으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
--

8. 제13조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야간취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의하여 취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 따라 취학하는 군위탁생---

-----.

제15조(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특칙)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 중 「군인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의 “획득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장교가 제13조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으로, 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의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군 참모총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제13조의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연 락 처	(02) 748 - 5185